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 교통사고환자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시범재활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안 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안 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 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기본  
입원료”를 각각 “6인실 이상 입원료”로 한다.

별표 2의 분류번호 키-1 입원료 상급병실료 금액(원) 중 “(기본입원료와의  
차액)”을 “(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으로 한다.

별표 3의 연번 7 입원료 세부인정사항 중 “(기본입원료와의 차액)”을 “(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으로 한다.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진료료 중  
분류란의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주 1, 2, 3, 가 및 나, 분류코드란의  
91501, 91502, 금액(원)란의 “26,910”, “17,940”을 삭제한다.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진료료 중  
분류코드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의 금액(원)란 중 “212,430”을  
“217,740”으로 개정한다.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진료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p><b>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Care</b></p> <p>주 : 1.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의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및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애 상태 평가 등을 위하여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2인 이상과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동시에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검사 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각각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 산정한다.</p> <p>2. 환자 입원 중 3회 이내 산정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추가 1회 산정할 수 있다.</p>	
91505	가.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3인)	114,670
91506	나.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4인)	146,330
91507	다.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5인 이상)	177,980
	<p><b>전문재활환자관리료</b></p> <p>주 : 전문재활환자관리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범재활치료 환자에 대하여 산정한다.</p>	
91598	가. 입원(1일당)	24,120
	<p><b>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b></p> <p>주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전문재활치료 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재활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p> <p>2.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이 참여하여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및 간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p> <p>3.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주도하에 공동으로 재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활종합계획에 따른 재활목표이행 여부, 재활효과 및 실시방법 등을 재평가 또는 진척도를 관리하고, 재활종합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p> <p>4.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각각 월 1회만 산정하되, 재활종합계획 평가료는 요양 초기에만 산정하고,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재활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재활목표설정 및 진척도를 관리한 경우에 산정한다.</p> <p>5.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4인을 초과한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이외에 다른 진료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일정 금액을 별도 가산하여 산정하되, 재활치료 팀 회의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p> <p>6. 환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한 경우 15,270원을 별도 산정한다.</p>	
91519		

	가.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91509	1)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114,670
91510	2)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초과 1인당)	18,290
91511	3) 재활종합계획 평가료(의사 가산 1인당)	36,590
	나.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	
91512	1)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76,440
91513	2)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초과 1인당)	12,200
91514	3)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의사 가산 1인당)	24,390
	<b>집중재활전원지원금</b>	
	주 : 1.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 치료센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의 수상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일정기간 (중추신경계손상 수상/수술 후 90일, 근골격계손상 수상/수술 후 60일) 내에 의학적 판단 및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전원 요양하도록 한 경우에 산정하고, 동일 환자는 전원횟수와 관계없이 최초 1회만 산정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15일까지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전원 요양하기까지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1545	가. 집중재활전원지원금(30일 이내)	700,000
91546	나. 집중재활전원지원금(60일 이내)	500,000
91547	다. 집중재활전원지원금(90일 이내)	300,000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2) 검사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생략)	12,620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생략)	25,24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생략)	38,240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2) 검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113	<b>6분 보행 검사</b> 주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행거리,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4,850
91170	<b>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b> 주 : 척수손상 등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145,470
91176 91177	<b>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평가</b> 주 :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선별 심리검사 나. 심층 심리검사	71,710 150,380
91184 91185	<b>다차원 정신 평가</b> 주 : 자동차사고 외상을 경험한 정신·심리적 문제가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신질환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사전 평가 나. 사후 평가	552,830 126,230
91182	<b>동적 족저압측정</b> 주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52,360
91189 91190	<b>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수행능력 평가</b> 주 : 뇌·척수손상 또는 절단 등으로 이동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수동 나. 자동	42,100 42,100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3) 이학요법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
91616 91617	<b>집단치료(30분당)</b> 주 : 1. 집단치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인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4인 이내의 환자에게 30분 이상의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운동치료 나. 작업치료	10,750 10,750

	<b>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Assistive Device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b> 주 : 1. 집중재활치료와 집중의지훈련은 각각 산정할 수 있다. 2. 상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치료를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하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치료를 30분 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훈련은 1:1 훈련을 30분 단위로 1일 60분 이내로 산정하고, 치료기간은 4주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91609	가. 상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34,910
91610	나. 상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27,230
91611	다. 하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24,980
91612	라. 하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24,980
91618	마.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 훈련(30분당)	40,830
91613	<b>일상생활동작 집중훈련(30분당)</b> 주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가정·사회복귀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과제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40,830
91614	<b>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30분당)</b> 주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보조도구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은 1:1로 1일 60분 이내로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보조도구별 10회까지 산정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 치료를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27,230
91615	<b>인지재활훈련(30분당)</b> 주 : 1.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의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인지재활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인지재활훈련은 1일 120분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26,600
91620	<b>로봇보행보조기재활훈련 Gait Assistive Device Training - Robotics</b> 주 : 1. 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행을 위한 액추에이터(actuator)를 활용하여 보조력, 하지 운동범위, 보장, 분속수, 보행속도, 양하지의 조화 등을 환자별로 개인화하여 일상에서의 보행보조기 활용을 목적으로 보행재활훈련과 로봇보행보조기의 착탈과 기립 및 장비운용법을 포함한 활용훈련을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A67020.02, 2등급) 또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A67080.01 3등급)를 활용한 경우 산정한다. 단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는 보행기능 향상 목적으로 정상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에 한함.	57,610

별표4의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 (1) 검사료 중 분류코드 91156 운전능력평가의 금액(원)란 중 “142,790”을 “146,360”으로 개정한다.

별표4의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 중 (2) 이학요법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901	<b>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b> 주 : 1.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30분 단위로 1일 4시간 이내,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치료기간은 12주 이내로 적용하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가. 집중 상담(30분당) 주 : 심리검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에게 집중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 집단 심리회복 프로그램(30분당) 주 : 1.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 가족, 동료 등 집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강사료 및 소모품비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62,130
91902	1) 4인 이하	35,610
91903	2) 5-7인	24,090
91904	3) 8인 이상	17,800

별지 제1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활종합계획서 (재활목표설정)

등록번호:				
회의 참석자		팀 평가회의 개최 일자	(    )회	년    월

### 1. 일반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	--

### 2. 상태소견 및 검사

주호소	
기왕증 (병력)	
주요 검사결과	
문제목록 (Problem list)	



### 3. 의료재활서비스 (재활간호)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간호평가	병동내 활동	
		수면	
		기분	
		인지정도	
		배뇨/배변	
		간병	
	담당자	기타	
	간호진단		
재활목표설정 및 관리	간호목표		
	간호계획		
	목표이행 여부		

### 3. 의료재활서비스 (물리치료)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물리치료 평가		
	담당자		
	문제 목록 (Problem list)		
재활목표 설정 및 관리	치료 목표 (Goal)	단기 치료 목표	
		장기 치료 목표	
	치료 계획 (Plan)		
	목표이행 여부		
	치료 효과 (Progress)		

3. 의료재활서비스 (작업치료)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작업치료 평가	
	담당자	
	문제 목록 (Problem list)	
재활목표 설정 및 관리	치료 목표 (Goal)	단기 치료 목표
		장기 치료 목표
	치료 계획 (Plan)	
	목표이행 여부	
	치료 효과 (Progress)	

### 3. 의료재활서비스 (언어치료)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언어치료 평가		
	담당자		
	문제 목록 (Problem list)		
재활목표 설정 및 관리	치료 목표 (Goal)	단기 치료 목표	
		장기 치료 목표	
	치료 계획 (Plan)		
	목표이행 여부		
	치료 효과 (Progress)		

3. 의료재활서비스 (재활사회사업)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재활사회 사업 평가	
	담당자	
	문제 목록 (Problem li st)	
재활목표설정 및 관리		

3. 의료재활서비스 (기타평가)

	담당자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재활목표설정 및 관리		

4. 재활종합의견

재활종합 계획 ( 재활목표설 정)	진료계획	
다음 재활종합 회의계획		
기타		
환자 또는 보호자 참석여부	[ ] 참석 [ ] 별지 보관 (별지에 참석자 서명 보관 가능) [ ] 불참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료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입원료의 명칭 변경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가. (생략)</p> <p>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p> <p>4. (생략)</p>	<p>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u>입원료</u>와의 차액) ----- ----- ----- ----- ----- -----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u>6인실 이상</u> 입원료만 지급하고 ----- ----- -----.</p> <p>4. (현행과 같음)</p>																				
<p><b>[별표 2]</b></p> <p>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분류번호</th> <th style="width: 10%;">코드</th> <th style="width: 20%;">분류</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40%;">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키-1</td> <td>(생략)</td> <td>[ 입 원 료 ] 상급병실료 (생략)</td> <td></td> <td>실제소요비용 (<u>기본입원료</u>와의 차액)</td> </tr> </tbody> </table>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키-1	(생략)	[ 입 원 료 ] 상급병실료 (생략)		실제소요비용 ( <u>기본입원료</u> 와의 차액)	<p><b>[별표 2]</b></p> <p>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분류번호</th> <th style="width: 10%;">코드</th> <th style="width: 20%;">분류</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40%;">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 입 원 료 ] 상급병실료 (현행과 같음)</td> <td></td> <td>실제소요비용 (<u>6인실 이상</u> <u>입원료</u>와의 차액)</td> </tr> </tbody> </table>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입 원 료 ] 상급병실료 (현행과 같음)		실제소요비용 ( <u>6인실 이상</u> <u>입원료</u> 와의 차액)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키-1	(생략)	[ 입 원 료 ] 상급병실료 (생략)		실제소요비용 ( <u>기본입원료</u> 와의 차액)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입 원 료 ] 상급병실료 (현행과 같음)		실제소요비용 ( <u>6인실 이상</u> <u>입원료</u> 와의 차액)																	

현 행				개 정 (안)			
<b>[별표 3]</b>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제3항 관련)				<b>[별표 3]</b>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제3항 관련)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의 2~3인실 산정기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7	입원료	(현행과 같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 ----- -----
<b>[별표4]</b>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주: 의료기관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기본진료료				<b>[별표4]</b>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주: 의료기관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기본진료료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91501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생략)	26,910		<삭제>	<삭제>	<삭제>	
91502	가. 최초 나. 2회째부터	17,940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212,430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217,740	
<신설>	<신 설>	<신 설>			<b>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Care</b> 주 : 1.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의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및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애상태 평가 등을 위하여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2인 이상과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동시에 대면 치료를 실시하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검사 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각각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환자 입원 중 3회 이내 산정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추가 1회 산정할 수 있다.		
				91505	가.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3인)	114,670	
				91506	나.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4인)	146,330	
				91507	다.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5인 이상)	177,980	

현 행			개 정 (안)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신설>	<신설>	<신설>	91598	<b>전문재활환자관리료</b> 주 : 전문재활환자관리료는 자동차보협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범재활치료 환자에 대하여 산정한다. 가. 입원(1일당)	24,120
<신설>	<신설>	<신설>	91519	<b>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b> 주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전문재활치료 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재활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이 참여하여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및 간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3.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주도하에 공동으로 재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활종합계획에 따른 재활목표이행 여부, 재활효과 및 실시방법 등을 재평가 또는 진척도를 관리하고, 재활종합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4.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각각 월 1회만 산정하되, 재활종합계획 평가료는 요양 초기에만 산정하고,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재활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재활목표설정 및 진척도를 관리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4인을 초과한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이외에 다른 진료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일정 금액을 별도 가산하여 산정하되, 재활치료팀 회의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환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한 경우 15,270원을 별도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가.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91509	1)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114,670
			91510	2)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초과 1인당)	18,290
			91511	3) 재활종합계획 평가료(의사 가산 1인당)	36,590
				나.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	
			91512	1)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76,440
			91513	2)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초과 1인당)	12,200
			91514	3)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의사 가산 1인당)	24,390
<신 설>	<신 설>	<신 설>		<b>집중재활전원지원금</b>	
				주 : 1.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 치료센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의 수상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일정기간 (중추신경계손상 수상/수술 후 90일, 근골격계손상 수상/수술 후 60일) 내에 의학적 판단 및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전원 요양하도록 한 경우에 산정하고, 동일 환자는 전원횟수와 관계없이 최초 1회만 산정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15일까지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전원 요양하기까지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1545	가. 집중재활전원지원금(30일 이내)	700,000
			91546	나. 집중재활전원지원금(60일 이내)	500,000
			91547	다. 집중재활전원지원금(90일 이내)	300,000
(2) 검사료			(2) 검사료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생 략)	12,310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현행과 같음)	12,620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생 략)	24,620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현행과 같음)	25,24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생 략)	37,31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현행과 같음)	38,240

현 행			개 정 (안)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신설	<신 설>	<신 설>	91113	<b>6분 보행 검사</b> 주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가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행거리,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4,850
신설	<신 설>	<신 설>	91170	<b>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 평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b> 주 : 척수손상 등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145,470
신설	<신 설>	<신 설>	91176 91177	<b>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평가</b> 주 :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선별 심리검사 나. 심층 심리검사	71,710 150,380
신설	<신 설>	<신 설>	91184 91185	<b>다차원 정신 평가</b> 주 : 자동차사고 외상을 경험한 정신·심리적 문제가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신질환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사전 평가 나. 사후 평가	552,830 126,230
신설	<신 설>	<신 설>	91182	<b>동적 족저압측정</b> 주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52,360
신설	<신 설>	<신 설>	91189 91190	<b>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수행능력 평가</b> 주 : 뇌·척수손상 또는 절단 등으로 이동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수동 나. 자동	42,100 42,100

현 행			개 정 (안)		
(3) 이학요법료			(3) 이학요법료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신설>	<신설>	<신설>		<b>집단치료(30분당)</b> 주 : 1. 집단치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인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4인 이내의 환자에게 30분 이상의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91616	가. 운동치료	10,750
			91617	나. 작업치료	10,750
<신설>	<신설>	<신설>		<b>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Assistive Device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b> 주 : 1. 집중재활치료와 집중의지훈련은 각각 산정할 수 있다. 2. 상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치료를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하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치료를 30분 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훈련은 1:1 훈련을 30분 단위로 1일 60분 이내로 산정하고, 치료기간은 4주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91609	가. 상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34,910
			91610	나. 상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27,230
			91611	다. 하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24,980
			91612	라. 하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24,980
			91618	마.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훈련(30분당)	40,830
<신설>	<신설>	<신설>	91613	<b>일상생활동작 집중훈련(30분당)</b> 주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가정·사회복귀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과제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40,830
<신설>	<신설>	<신설>	91614	<b>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30분당)</b> 주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보조도구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은 1:1로 1일 60분 이내로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보조도구별 10회까지 산정한다.	27,230

현행			개정(안)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 치료를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91615	<b>인지재활훈련(30분당)</b> 주 : 1. <u>재해일부터 2년 이내의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인지재활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u> 2. <u>인지재활훈련은 1일 120분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u>	26,600
<신설>	<신설>	<신설>	91620	<b>로봇보행보조기재활훈련 Gait Assistive Device Training - Robotics</b> 주 : 1. <u>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행을 위한 액추에이터(actuator)를 활용하여 보조력, 하지 운동범위, 보장, 분속수, 보행속도, 양하지의 조화 등을 환자별로 개인화하여 일상에서의 보행보조기 활용을 목적으로 보행재활훈련과 로봇보행보조기의 착용과 기립 및 장비이용법을 포함한 활용훈련을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u> 2. <u>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A67020.02, 2등급) 또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 3등급)를 활용한 경우 산정한다. 단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는 보행기능 향상 목적으로 정상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에 한함.</u>	57,610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주: 의료기관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주: 의료기관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사료			(1) 검사료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91156	운전능력 평가 Driving Ability Evaluation 주 : (생략)	142,790	91156	운전능력 평가 Driving Ability Evaluation 주 : (현행과 같음)	146,360

현 행			개 정 (안)		
(2) 이학요법료			(2) 이학요법료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 코드	분류	금액(원)
<신 설>	<신 설>	<신 설>		<b>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b> <u>주 : 1.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u> 2. <u>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30분 단위로 1일 4시간 이내,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치료기간은 12주 이내로 적용하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u>	
			91901	가. <u>집중 상담(30분당)</u> <u>주 : 심리검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에게 집중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u> 나. <u>집단 심리회복 프로그램(30분당)</u> <u>주 : 1.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 가족, 동료 등 집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u> 2. <u>강사료 및 소모품비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u>	62,130
			91902	1) <u>4인 이하</u>	35,610
			91903	2) <u>5-7인</u>	24,090
			91904	3) <u>8인 이상</u>	17,800



## 현 행

<신 설>

## 개 정 (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24. 00.00.>

### 재활종합계획서 (재활목표설정)

등록번호:

회의 참석자	팀 평가회의 개최 일자	( )회	년 월 일
-----------	-----------------	------	-------

#### 1. 일반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호
-----	--------	---

#### 2. 상태소견 및 검사

주소	
기왕증 (병력)	
주요 검사결과	
문제목록 (Problem list)	

#### 3. 의료재활서비스 (재활간호)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간호평가	병동내 활동	
		수면	
		기분	
		인지정도	
		배뇨/배변	
		간병	
	담당자	기타	
간호진단			
재활목표 설정 및 관리	간호목표		
	간호계획		
	목표이행 여부		

현 행

개 정 (안)

3. 의료재활서비스 (물리치료)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물리치료 평가	
	담당자	
	문제 목록 (Problem list)	
재활목표 설정 및 관리	치료 목표 (Goal)	단기 치료 목표
		장기 치료 목표
	치료 계획 (Plan)	
	목표이행 여부	
	치료 효과 (Progress)	

3. 의료재활서비스 (작업치료)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작업치료 평가	
	담당자	
	문제 목록 (Problem list)	
재활목표 설정 및 관리	치료 목표 (Goal)	단기 치료 목표
		장기 치료 목표
	치료 계획 (Plan)	
	목표이행 여부	
	치료 효과 (Progress)	

3. 의료재활서비스 (언어치료)		
전문분야별 신체 기능평가	언어치료 평가	
	담당자	
	문제 목록 (Problem list)	
재활목표 설정 및 관리	치료 목표 (Goal)	단기 치료 목표
		장기 치료 목표
	치료 계획 (Plan)	
	목표이행 여부	
	치료 효과 (Progress)	

